

#### [서식 예]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의 소

## 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 △ 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#### 화지확정처분 취소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피고가 2000. O. O.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확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#### 1. 처분의 경위

- 가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300㎡는 원래 원고의 부(父)인 소외 김□□의 소유이던 것으로 19○○. ○. 경 사망한 후 원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다.
- 나. 그런데 위 토지는 20〇〇. 〇. 〇. 건설부 고시 제000로서 결정, 고시된 〇〇시 제○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제3공구내에 편입되었고 20〇〇. 〇. 〇. 환지계획인가 및 공람공고를 거친 다음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결과 20〇〇. ○. ○.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.
- 다. 이후 감정평가업자인 소외 ☆☆감정평가법인과 소외 ★★감정평가법인에게 20○○. ○. ○.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가격을 산출할 것을 의뢰하여 ☆☆감정평가법인은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150㎡를 표준



지로 선정한 다음 20○○. ○. ○.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비준가격으로 이 사건 대지의 m²당 가격을 10만원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20○○. ○. ○. 작성하였고, 한편 ★★감정평가법인은 같은 방법에 따른 비준가격으로이 사건 대지의 m²당 가격을 15만원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같은 해 ○. ○.작성하여 피고에게 각 제출하자 피고는 위 양 감정내용을 산술 평균하여 이사건 대지의 가격을 금37,500,000원 [(100,000원+150,000원)×1/2×300m²] 으로산출한 다음 20○○. ○. ○. 환지확정처분을 하였습니다.

#### 2. 처분의 위법성

- 가.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표준지로 삼은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지는 공원용지를 끼고 있고 상가형성도 되어 있지 아니한데 다가 향후 발전가능성이 없는 곳인데 반하여, 이 사건 대지는 ○○시청과 ○○역을 잇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어서 위표준지 선정 자체가 부적절하고 같은 동 ○○의 토지나 같은 동 ○○의 □ 토지가 되어야 할뿐더러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격도 실제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고.
- 나. 청산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산금 교부시를 기준으로 청산할 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.
- 3.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환지확정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○○.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확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주민등록등본

1. 갑 제2호증

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
1. 갑 제3호증

토지대장

1. 갑 제4호증

지적도

1. 갑 제5호증

개별공시지가확인서

1. 갑 제6호증

환지처분통지서



1. 갑 제7호증의 1내지 2 감정서

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 부 서 1통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## 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 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